



보도시점 2026. 9. 3.(목) 11:30 배포 2026. 9. 2.(수) 18:00

군 복무 청년에 대한 보상과 지원 대폭 강화

- 관계부처 합동 「군 복무 청년 관련 정책 개선방안」 발표 -

- 병사 상해보험 신규 도입, 골절·절단·정신질환 등 보장 확대
- 전역 후 실손보험 신규 도입, 인과관계 입증없이 후유증 치료 보전
- 청년사업의 지원연령을 군 복무기간만큼 1~6년 연장 추진

□ 정부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군 복무 청년에게 정당하고 충분한 보상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「군 복무 청년 관련 정책 개선방안」을 발표하였다.

○ 이번 방안은 지난 6월 9일 ‘제3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’에서 토의한 ‘군 복무 청년 관련 정책 개선방안’을 마무리한 것으로서,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제13차 국가정책조정회의(한성숙 국무총리 주재)에서 확정되었다.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.

① 군 의무복무 청년 공공 상해보험 도입 추진 (국방부)

□ 현재, 국방부에서 군 복무 중 발생한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해 지원하는 군 병원 무상진료, 「재해보상법」상 장애보상금 지원 등은 제한된 인프라, 협소한 보상범위 등으로 폭넓은 지원에 한계가 있으며,

○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경기도 등 지자체에서는 별도의 ‘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사업’을 운영 중으로, 청년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상황이다.

* 경기도 군 상해보험 만족도 조사 결과(‘25.下) 만족 88%, 전국 확대 찬성 95%

🔊 지자체 상해보험 보험금 수혜 사례

- ▶ (경기) 20대 현역병 A씨는 훈련 도중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돼 암 진단, 민간병원에서 암 제거 수술 및 입원 → 진단금, 수술비 등 보험금 300만원 지급하여 병원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절감
- ▶ (전북) 20대 현역병 B씨는 지난해 유격 훈련에서 발목 골절, 국군병원으로 이송돼 수술 및 20일 입원 치료 → 치료 종료 6개월 뒤 후유장애 10% 진단을 받아 골절 진단금, 수술비, 상해후유장애 보상금 등 보험금 610만원 지급

- 그러나 지자체별로 해당 사업 운영여부 등이 상이하여, 동일하게 군 복무 중 발생한 질병·상해임에도 거주 지역에 따라 지원여부, 지원항목, 보상수준 등에 차이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다.

□ 이에, 국방부 차원에서 전체 의무복무 병사(현역병, 상근예비역)를 대상으로 단체 상해보험을 도입한다.

- 과기정통부 우정사업본부와의 협업을 통해 합리적 공공 보험설계안을 마련하여, 누구나 군 복무 중 발생한 질병·상해에 대해 골절·절단진단금, 정신질환 위로금 등 폭넓은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.
- 이를 통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의무복무자가 혹시라도 다치는 경우 충분히 치료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한편, 보험사의 과도한 이익추구도 방지할 예정이다.

<군 복무 병사 공공 상해보험 설계안>

구분	보장액	구분	보장액
사망(상해/질병)	5,000만원	화상 진단금	25만원
영외체류기간중 교통 상해/사망	최대 2억원	골절 진단금	30만원
폭발,화재,붕괴사태 사망/후유장애	최대 2,000만원	외상성 절단 진단금	100만원
후유장애(상해/질병)	최대 5,000만원	정신질환 위로금	100만원
입원비(상해/질병)	4만원/일당	뇌출혈·급성심근경색 진단금	300만원
수술비	20만원	중증장애 진단금	1,000만원

※ 기존 제도(「군인재해보상법」 상 장애보상금 및 나라사랑카드 상해보험)로는 보상되지 않았던 항목

② 공공 실손보험 도입을 통한 전역 이후 의료비 지원 확대 (국가보훈부)

- 현재, 보훈부는 복무 중 질병·상해를 입은 제대군인에 대해 군 복무와의 인과성이 인정되면 상이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훈병원·보훈위탁병원에서의 진료비를 전액 지원하고,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복무 중 발생한 중증·난치성 질환에 한해 본인부담금의 50%를 지원하고 있다.
- 그러나 군 복무와 질병·상해간의 인과성 입증에 현실적 어려움이 있으며, 전역 후 치료가 필요한 경우 학업·취업준비 등 사회 복귀에 전념할 청년 제대군인과 그 가족의 의료비 부담이 가중되어 이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.

☞ 사례

- ▶ 30대 A씨는 군 복무 중 총기훈련 등으로 청력저하 증상을 겪었으나 군 복무 당시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겨 별다른 치료 없이 전역, 여전히 이명·난청 증상이 지속되어 일상생활을 하면서 치료를 병행 중
- ▶ 20대 B씨는 군 복무 당시 행군 등 전투 훈련을 소화하면서 경미한 무릎관절 통증을 느꼈으나 치료를 미루었고, 전역 이후 통증이 만성화

- 이에, 보훈부는 청년 제대군인(현역병, 상근예비역)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 실손보험을 도입한다.
- 전역 후 실손보험 역시 과기정통부 우정사업본부와 협업으로 마련한 합리적 공공 보험설계안으로, 청년 제대군인들이 전역과 동시에 1년 6개월 동안 복무 중 발병 또는 상해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.
- 민간보험사에서 판매중인 5세대 실손보험 수준의 보상을 통해 청년 제대군인들이 전역 후에도 진료비에 대한 부담 없이 충분히 치료를 받고 건강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.

<실손보험 주요 보장내용>

구 분		자기부담률	보장한도
급여 항목	입원	20%	5,000만원
	통원	Max(건보본인부담률, 20%, 1~2만원)	
비급여 항목	중증	30%	5,000만원
	비중증	50% (미용, 성형 등 미지급)	1,000만원

③ 군 복무 청년 청년정책 지원연령 연장 추진 (국조실)

- 현재 「제대군인지원법 시행령」 제19조에 따라 국가기관·지자체 등이 채용시 제대군인의 복무기간에 따라 응시연령 상한을 1~3세 연장하고 있으나,
 - 청년정책의 경우 일부 사업들은 청년들이 지원시 군복무로 인해 연령이 초과(34세 등)되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다.
- 이에, 국무조정실에서 '26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에 포함된 중앙행정기관 청년정책 대상으로 지원연령 상한 연장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, 34개 개선 과제를 발굴하였다.

< 군복무 기간 반영 지원연령 연장 추진 주요사업 >

34세 상한 사업	39세 상한 사업
• 청년성장프로젝트 (노동부)	• 청년층 공공분양주택 (국토부)
• 지방청년인재 재외공관 파견 (외교부)	• 청년층 통합공공임대주택 (국토부)
• 경쟁형 AI 혁신인재 성장지원 (과기정통부)	• 청년층 매입임대/전세임대 (국토부)
• 청년월세지원사업 (국토부)	• 청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(국토부)
• 청년 전월세 대출공급 보증지원 (금융위)	•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(농식품부)
• 청년미래이음대출 (금융위)	• 맞춤형 농지지원사업 (농식품부)
• 정부위원회 청년위원 위촉 (전부처)	•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(농식품부)

- 위 개선과제에 대해서는 부처별로 지원연령을 연장하기로 하였으며, 향후 보훈부에서 「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」 개정 등을 통해 청년정책 지원연령 산정 시 병역이행기간이 반영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.
- 한성숙 국무총리는 “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. 군 복무 청년들이 국가를 위해 보낸 시간에 대해 충분히 예우하기 위해 복무 중은 물론, 전역 이후까지도 두텁게 지원해 나가겠다”며,
 - “군 복무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당하고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방부, 보훈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오늘 논의된 과제들을 신속히 추진해 주시기를 바란다”고 당부하였다.

담당 부서 <군 복무 청년 총괄>	국무조정실 청년정책기획관실	책임자	과 장	송혜영 (044-200-1994)
		담당자	사무관	김보현 (044-200-1998)
담당 부서 <청년연령 연장>	국무조정실 청년정책기획관실	책임자	과 장	김윤경 (044-200-6323)
		담당자	사무관	박지혜 (044-200-6326)
담당 부서 <공 동>	국방부 보건정책과	책임자	과 장	김해인 (02-748-6640)
		담당자	사무관	강재원 (02-748-6651)
담당 부서 <공 동>	국가보훈부 제대군인정책과	책임자	과 장	최기찬 (044-202-5710)
		담당자	사무관	김형우 (044-202-5717)



군 복무 청년이 더 **등등**한 대한민국

군 복무 청년 관련 정책 개선방안

1 병사 상해보험 신규 도입 '27.7~

- 대상 : 현역 및 상근예비역
- 내용 : 골절·화상·절단진단금, 정신질환 위로금, 수술·입원에 따른 보상금 등 지원
- 기간 : 복무기간 전체



2 제대군인 실손보험 신규 도입 '27.7~

- 대상 : 전역한 현역 및 상근예비역
- 내용 : 인과성 입증·중증 여부와 관계없이 군 상해·질병 후유증 치료비 지원
- 기간 : 전역 후 1년 6개월



3 군 복무 청년 청년정책 지원연령 연장 추진

- 대상 : 전역한 현역병, 상근예비역, 사회복무요원 및 장교·부사관 등 군 복무 청년
- 내용 : 군 복무로 인해 청년연령(34세 등)이 초과되더라도 복무기간만큼 지원연령 연장

